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10.10.14 (목) 14:00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민병완

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김종필 의원(찬성자 6인)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0년 9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3. 제안 이유

○ 도민의 건전한 소비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함(안 제2조, 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9조, 안 제17조 등)

나. 일부조항의 자구수정(안 제11조, 안 제13조 등)

5. 검토의견

○ '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, 자구를 부분 수정한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